

서울특별시 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의견

- 한강의 보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책의 수립·집행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강보전자문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상설위원회보다는 한강관리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등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한강보전 등에 관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한강보전자문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동 위원회는 1989. 1. 1 자로 구성되어 현재 34명의 위원이 5개 소분과위원회(치수·이수분과위원회, 공원·녹지분과위원회, 환경·공해분과위원회, 자연생태계분과위원회, 시민참여분과위원회)를 두고 한강의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한강보전을 위한 범시민 참여운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있으나 '9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최근 5년간 회의개최 및 처리 안건수는 연간 평균 3회에 9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위원회가 설치목적에 비추어 볼 때 운영실적이 미흡하여 실효성이 적으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나, 위원회 설치는 법령·조례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맞고, 규칙이나 방침에 의한 것은 잘 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 서울시에는 75개 위원회가 있고, 이 중 법령·조례근거는 72개 위원회이고, 규칙 1개, 훈령 1개, 방침 1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화시키든지 아니면 폐지되어야 하는바, 이번 폐지조례안은 시 집행부가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자문회의를 설치함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한강보전자문위원회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자문회의의 설치 목적이나 각각 다르므로 동 조례안을 폐지하는 경

우 한강의 시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만족하는 나머지 치수·환경오염·자연생태계 파괴 등 한강의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서울특별시 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漢江管理事業所 主要懸案 業務報告

I. 一般現況

관리구역

- 구 간 : 강동구 하일동~강서구 개화동(연장 41.5km)
- 면적 : 39.9km<sup>2</sup>(수역 33.0km<sup>2</sup>, 공원 6.9km<sup>2</sup>)
  - 서울시 행정구역의 6.6%
- 시민공원 : 12개 지구(11개 구청 관할)
  - 조성 9개 지구 4.7km<sup>2</sup>(운동장, 초지 등)
  - 미조성 3개 지구 2.2km<sup>2</sup>(고덕, 강서, 난지)

(다음 페이지에 계속)